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Brazil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1.07.25 - 2012.07.24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유진투자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29	제12조(투자신탁 회계기간)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2012년 7월 24일 경과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하며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2012년 7월 24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간 :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. 제 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: 201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
2012.06.29	제38조(투자신탁 보수)	①생략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 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단,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을 제외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	①생략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 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단, 회계기간 종료일을 제외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

		<p>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제 1 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: 제 1 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 지급기준일까지 3. 생략 <p>이하 생략</p>	<p>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. 2. 제 1 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: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도래하는 매분배금 지급기준일까지 3. 생략 <p>이하 생략</p>
2012.06.29	제39조(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비용 등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생략 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증권 등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예탁 및 결재비용 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.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. 증권 등 자산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가격정보비용 8. 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의 투자정보비용 9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<p>추 가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생략 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증권 등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예탁 및 결재비용 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.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. 증권 등 자산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가격정보비용 8. 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의 투자정보비용 9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0.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 11.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

		<p>추 가</p> <p>10.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</p> <p>추 가</p> <p>11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③제 2 항제 8 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④제 2 항제 10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	<p>비용</p> <p>12.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</p> <p>13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</p> <p>14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③제 2 항제 8 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④제 2 항제 12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
2012.06.29	제41조(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)	<p>① 생 략</p> <p>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</p>	<p>① 생 략</p> <p>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,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</p>
2012.06.29		<p>신 설</p>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(투자신탁 회계기간 변경 및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등)</p>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2.06.29	말소	김남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7년 2월 KAIST 산업공학 학사 - 2007년 8월 ~ 現삼성자산운용 ETF 운용1팀 	2110000109

2012.06.29	신규	정승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1년 08월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- 2004년 02월 서울대 재무학 석사 - 2004년 01월 ~ 2007년 12월 SK텔레콤 재무관리실 회계팀 - 2008년 01월 ~ 現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 	2110000108
------------	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